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2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관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 토 교 통 부

2022. 2

국 토 교 통 부
(도시활력지원과)

담당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도시활력지원과	행정사무관	이재훈	044-201-3733	neokelsen@korea.kr

- 목 차 -

Ⅰ. 과업 주요내용 ····· 1

Ⅱ. 제안 요청사항 ····· 2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5

Ⅳ. 제안서 평가 ····· 7

Ⅴ. 계약상대자 선정 ····· 8

※ 제안서 관련 서식 ····· 11

※ 과업지시서 ····· 11

Ⅰ 과업 주요내용

1. 과업명 : 「'22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관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문제,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된 지역 다수

○ 이러한 **주거취약지역은** 재개발사업도 곤란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순위**에서도 밀려 방치되어 있는 상황

☞ **긴요한 생활인프라**(상·하수도, 커뮤니티시설, 소방도로) 확충, **집수리**, 복지·일자리 등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이 절실

□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주거 최저기준 미달지역을 선정**하여 **경제·사회·물리적 사업**을 **종합패키지**로 **지원**하는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

* 우리부는 균형위가 '15~'21까지 선정한 136곳을 받아 예산교부·점검 등 사업관리

3. 과업의 목적

□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관리방안 고도화** 필요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여 계획수립, 사업시행, 주민 참여 등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연차별 성과평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우수사례 발굴**하여 후속사업 추진에 활용

4. 용역비 : 6,000만원(부가세포함)

5.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8개월(240일)

6. 계약방법 : 일반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이행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용역 수행자를 선정

*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격평가 실시

II 제안 요청사항

1. 주요 과업내용

❑ 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분석 및 진단
❑ 2022년 신규 선정 도시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 추진 중에 있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안

① 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분석 및 진단

○ ‘15년부터 ’21년까지 선정된 사업지 136곳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 **완료사업**(‘15~’17년)에 대하여는 **사업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진행사업**(‘16~21년)에 대하여는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추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시행 지자체, 주민협의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시행과정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2 2022년 신규 선정 도시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

○ 지자체,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등 사업시행 주체 및 관계자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등 **소통채널 강화**

○ 전문가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신규 선정 도시**에 맞는 맞춤형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추진 중에 있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16년부터 '21년까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변경 검토 지원 등 **정기적 사업점검**

4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안

○ 연차별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성과평가와 집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 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 도시 새뜰마을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사업시행 매뉴얼 개정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제안**

2. 과업 추진 체계

□ 추진 조직 구성 및 역할

도시활력지원과(사업총괄)		**운용대행사**(사업자)
▶사업기획, 실행총괄 ▶용역 관리 및 운영 검수 ▶예산집행	⇔	▶ 연구 용역 수행 ▶ 용역 내용 관련 결과물 분석 ▶ 용역 내용 산출물 결과 보고

□ 추진 일정

세부내용 \ 기간(월)	M+1	M+2	M+3	M+4	M+5	M+6	M+7	M+8
1. 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분석 및 진단								
2. 2022년 신규사업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추진 중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4.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안								
5. 워크숍 개최(연1회)								
6. 현장컨설팅 및 변경검토회(수시)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접수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e-발주시스템)

□ **제안서 작성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3)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력,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개인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이력 사항)
3. 주요사업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제안 내용	
1. 연구 개요	○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연구방향 및 내용	○ 연구의 방향과 연구 내용을 기술
3. 과제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 참여연구원 규모 및 각 연구원별 업무분장 내용을 기술
4. 용역기간(추진일정)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착수보고, 수시보고, 검토회의 등)
5. 기타 관리방안	○ 품질관리, 위험관리,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Ⅳ. 기타	
1.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 제시 - 연구수행 범위 설정 - 연구수행 방법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
2. 추가제안 부분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5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전자제출

* 제안요약서는 **10장(2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 협의하여 처리함

Ⅳ 제안서 평가

1.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요소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가방법
제안기관 일반현황 (20)	기관 평가 (10)	○ 기관 예산규모(정부 출연금 포함)	5	계량
		○ 관련 연구 인력(석, 박사 등) 보유수	5	"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10)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10	"
과업수행 부분(80)	제안 개요	○ 연구용역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한 이해 정도	5	비계량
	연구의 방향 및 내용	○ 연구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 연구 내용의 적합성 ○ 적용 논리의 적정성	20	"
	연구인력 및 업무분장	○ 연구조직 인력구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원 업무분장의 적정성	5	"
	연구 기간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의 적절성 ○ 세부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0	"
	기타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10	"
	기술·지식 능력	○ 연구용역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성	20	"
	추가제안 부문	○ 추가제안 내용의 우수성 ○ 추가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10	"
계			100	

※ 기술능력(80%) 및 가격(20%)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ⅰ)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ⅱ)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기관 예산규모(5점)

구 분	20억원 초과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점 수	5	4	3

* 기관 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기준

- 관련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5점)

구 분	5인 이상	3~4인	2인 이하
점 수	5	4	3

* 증빙서류 제출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횟수(10점)

구 분	0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10	9	8	7

2. 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

Ⅴ 계약상대자 선정

1. 선정방식 및 기준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80%) + 가격평가점수(20%)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한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표지
2. 제안서 내용 (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4. 관련연구 분야 인력현황
5. 용역(연구) 수행실적
6. 연구진 이력사항
7.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

<양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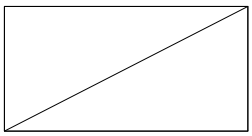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22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관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기관(업체)명 : (인)

<양식 2>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22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관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table>
<tr><td>1. 회사(기관)명</td><td colspan="2"></td><td>2. 대표자</td><td></td></tr>
<tr><td>3. 용역등록 분야</td><td colspan="4"></td></tr>
<tr><td>4. 주 소</td><td colspan="4"></td></tr>
<tr><td>5. 대표 전화번호</td><td colspan="4"></td></tr>
<tr><td>6. 설립연도</td><td colspan="4">년 월 일</td></tr>
<tr><td>7. 주요연혁</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8. 예산규모</td><td>2019년</td><td>2020년</td><td colspan="2">2021년</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9. 상시 종업원수</td><td colspan="4"></td></tr>
<tr><td>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td><td colspan="4"></td></tr>
</table>

<양식 4>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양식 5>

용역(연구) 수행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건명	개요	용역금액	발주처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비고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관련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연구보고서, 조사실적만 인정(학위논문 불인정)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인정(비고에 주계약자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을 기재(조사업무는 표본수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양식 7>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

2.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

(참여율은 본 과업에서 차지하는 참여비중으로 기재)

<양식 8>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0000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2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운영관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

과업지시서

국토교통부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2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관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문제,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된 지역 다수

○ 이러한 **주거취약지역은** 재개발사업도 곤란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순위**에서도 밀려 방치되어 있는 상황

☞ **긴요한 생활인프라**(상·하수도, 커뮤니티시설, 소방도로) 확충, **집수리**, 복지·일자리 등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이 절실

□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주거 최저기준 미달지역을 선정**하여 **경제·사회·물리적 사업**을 **종합패키지**로 **지원**하는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

* 우리부는 균형위가 '15~'21까지 선정한 136곳을 받아 예산교부·점검 등 사업관리

3. 과업의 목적

□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관리방안 고도화** 필요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여 계획수립, 사업시행, 주민 참여 등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연차별 성과평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우수사례 발굴**하여 후속사업 추진에 활용

4.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8개월(240일)

5. 계약방법 : 일반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이행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 용역 수행자를 선정

*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격평가 실시

Ⅱ. 주요 과업내용

❑ 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분석 및 진단
❑ 2022년 신규 선정 도시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 추진 중에 있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안

1. 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분석 및 진단

○ '15년부터 '21년까지 선정된 사업지 136곳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 **완료사업**('15~'17년)에 대하여는 **사업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진행사업**('16~21년)에 대하여는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추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시행 지자체, 주민협의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시행과정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2. 2022년 신규 선정 도시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

○ 지자체,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등 사업시행 주체 및 관계자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등 **소통채널 강화**

○ 전문가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신규 선정 도시**에 맞는 맞춤형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추진 중에 있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16년부터 ’21년까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변경 검토 지원 등 **정기적 사업점검**

4.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안

○ 연차별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성과평가와 집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 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 도시 새뜰마을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사업시행 매뉴얼 개정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제안**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과업에서 취득한 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6) 각종 통계 및 자료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15일 전**에 보고한다.

3)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3.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에서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자문회의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최종성과물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 시	5부	최종보고서 (CD포함)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예정공정표

세부내용 \ 기간(월)	M+1	M+2	M+3	M+4	M+5	M+6	M+7	M+8
1. 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분석 및 진단								
2. 2022년 신규사업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추진 중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4.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안								
5. 워크숍 개최(연1회)								
6. 현장컨설팅 및 변경검토회(수시)								

Ⅵ.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부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인가근거・참여자・발간일자 등)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